

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-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(안 제104조의11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'21.7월부터 특고·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결과, 현재 19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
 - * ('21.7) 특고 12개 직종 → ('22.1) 플랫폼 2개 직종 → ('22.7) 특고 5개 직종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1개 社 전속성 규정이 폐지('23.7)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, 고용-산재보험 간 불일치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*에 대해 산재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, 고용·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
 - * ①보험설계사(+교차모집인, 공제모집인) ②방과후학교강사(+유치원·어린이집강사)
 - ③택배기사(+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) ④신용카드회원 모집인(+제휴모집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업 등 고용위기 시 보호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